

이승준 맥형사소송법, 이승준 맥객관식이 앞으로는 이승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편-, 이승준 형사소송법 - 객관식문제편- 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출간예정 이승준 형사소송법 - 기출문제편- 이승준 형사소송법 - 최신판례문제편-

2009년 9급 국가직(검찰, 교정, 보호관찰)형사소송법 시험

해설과 답 - 법학박사 이승준 -

총평- 법조문문제(9문제)/ 판례문제(10문제)/ 이론문제(1문제)의 비율로 출제되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출제경향과 유사하다. 또한 몇몇 문제에서 약간은 까다로운 지문이 나왔으며 개정법을 물어보는 문제와 최신판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다수 나와서 좀 어렵게 느껴던 수험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승준 맥형사소송법 과 이승준 맥객관식을 통해 충분히 언급되는 정도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이번 마무리반에서 개정법령과 최신판례를 강조하였으며 마무리 개정법령 특강 및 최신판례특강을 들었던 수험생들은 아주 유리할 것 이라고 본다. 2004년에서 2008년까지의 최신판례를 물어보는 문제가 7문제이며 개정형사소송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6문제가 출제되었다. 따라서 본 기출문제의 해설부분에는 찾아보기 쉽게 맥기본서의 관련페이지와 마무리 특강(일일마무리 특강자료)자료에서 적중된 문제들을 표시하도록 하였다.(여러문제가 혼합하여 적중된 경우에는 대표문제하나만을 표시함)

문 1.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 ② 고유관할 사건 계속 중 관련사건이 계속된 후에 법원이 양 사건을 병합 심리하지 않고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를 먼저 종결하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이 된다.
- ④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해설

①형사소송법 제5조

②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에 의하여 병합 기소되거나 추가 기소되어 합의부에 계속된 관련사건 중 본래 합의부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은 합의부가 재량에 따라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관할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법 제9조 단서) 또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에 의하여 병합 기소되거나 추가 기소되어 어느 한 법원에 계속된 관련사건 중 병합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본래의 관할

이승준 맥형사소송법, 이승준 맥객관식이 앞으로는 이승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편-, 이승준 형사소송법 - 객관식문제편- 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출간예정 이승준 형사소송법 -기출문제편- 이승준 형사소송법 - 최신판례문제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법 제7조). 따라서 설문의 경우처럼 관할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병합관할하게 된 법원에서 심리할 수도 있고 병합 전 관할권에 이송할 수도 있다.

③ (대법원 2006.12.5자2006초기335 전합)

④ 형사소송법 제10조

답 ②

맥형소법 - 56p/ 마무리 일일특강자료 70페이지 1번문제

문 2. 당사자의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증거조사 완료 전이라도 동의를 취소할 수 없다.
- ② 검사가 유죄자료로 제출한 증거도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 ③ 증거동의는 개별적인 증거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괄적으로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제1심에서 증거동의를 하였더라도 제2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취소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해설

- ① 증거조사완료전 까지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 ② (대판 1994.11.11, 94도1159)
- ③ 동의는 개별적동의가 원칙이지만 판례는 포괄적동의도 가능하다고 본다(대판 1983.3.8, 82도2873).
- ④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를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판 1996.12.10. 96도2507)

답 ②

맥형소법 - 613p/ 마무리일일특강자료 247번

문 3.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범죄현장에서 긴급하게 작성한 후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실황조사서
- ② 주민들의 진정서사본

- 이승준 맥형사소송법, 이승준 맥객관식이 앞으로는 이승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편-, 이승준 형사소송법 - 객관식문제편- 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출간예정 이승준 형사소송법 - 기출문제편- 이승준 형사소송법 - 최신판례문제편-
- ③ 외국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 ④ 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입력한 메모리카드

해설

- ①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범죄현장에서 긴급하게 작성한 후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1989.3.14, 85도1399).
- ②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기록상 원본의 존재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사유도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1983.12.13. 83도2613)
- ③ 외국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얻은 정보를 회답하여 온 문서(대판 1979.9.25, 79도1852)
- ④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업으로 하면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 상대방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방법 등을 메모지에 적어두었다가 직접 메모리카드에 입력하거나 업주가 고용한 다른 여직원이 그 내용을 입력한 사안에서, 위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대판 2007.7.26. 2007도3219)

답 ④

맥형소법 - 594p/ 마무리 일일특강자료 80페이지 2번문제

문 4.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상소심이 추징을 몰수로 변경하더라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③ 피고인만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 ④ 제1심에서 별개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은 두 사건을 항소심이 병합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

해설

- ① 대판 1970.1.27, 69도2195
- ② 대판 2005.10.28, 2005도5822
- ③ 대판 1992.12.8, 92도2020
- ④ 항소심이 제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건을 병합 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판 2001. 9. 18. 2001도3448).

답④

맥형소법 - 751p/ 마무리 일일특강자료 63페이지 2번문제

이승준 맥형사소송법, 이승준 맥객관식이 앞으로는 이승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편-, 이승준 형사소송법 - 객관식문제편- 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출간예정 이승준 형사소송법 -기출문제편- 이승준 형사소송법 - 최신판례문제편-

문 5.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간통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긴급체포가 가능한 범죄이다.
- ② 사법경찰관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체포영장 청구시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피의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해설

- ① 긴급체포의 요건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이므로 2년이하의 징역인 간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③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법 200조의 2 제5항)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긴급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석방일시와 석방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6조 제3항)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제217조 제1항)

답 ②

맥형소법 241p/ 마무리 일일특강자료 4페이지 9번내용

문 6. 간통죄의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상 고소권이 인정된다.
- ② 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에는 그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③ 간통죄로 고소한 후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되면 고소취소로 간주된다.
- ④ 아내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아내의 간통죄 고소를 고소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해설

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

이승준 맥형사소송법, 이승준 맥객관식이 앞으로는 이승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편-, 이승준 형사소송법 - 객관식문제편- 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출간예정 이승준 형사소송법 -기출문제편- 이승준 형사소송법 - 최신판례문제편- 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

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판 1992.6.23. 92도682)

ㄷ. 공판정에서의 진술 즉 원본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ㄹ. 제312조 제2항에 의해 증거능력 인정된다.

ㅁ. 제312조 제3항에 의해 증거능력 인정된다.

답 ③

맥형소법 546p/ 마무리일일특강자료 231번, 21페이지 문제

문 8.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포괄일죄의 경우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함은 물론,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정범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한다.

③ 공문서위조죄에서 위조의 수단과 방법, 뇌물죄에서 공무원의 직무범위, 상해죄에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은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증거요지를 적시할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모든 증거를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은 표시하여야 한다.

해설

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할 것이다(대판 1983.1.18. 82도2572)

② 대판 1981.11.24, 81도2422

③ 대판 1979.11.13, 79도1782, 대판 1982.9.28, 80도2309, 대판 1982.12.28, 82도2588

④ 대판 1971.2.23, 70도25291

답. ①

맥형소법 - 689p/ 마무리일일특강자료 275번

문 9.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의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제기된 사건(‘국민참여재판’은 제외)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것인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이승준 맥형사소송법, 이승준 맥객관식이 앞으로는 이승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편-, 이승준 형사소송법 - 객관식문제편- 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출간예정 이승준 형사소송법 - 기출문제편- 이승준 형사소송법 - 최신판례문제편-

② 공판준비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된다.

③ 공판준비절차는 수소법원이 주재하며, 합의사건의 경우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해설

① 제36조 제1항

②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66의15).

③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공판준비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제266의7 제3항)

④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66의8 제4항).

답 ②

맥형소법 - 452p/ 마무리 일일특강 자료 - 13페이지 21번 내용

문 10.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의 경우에 법원은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를 믿거나 믿지 않아야 하며, 그 중 일부만을 믿을 수는 없다.

③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④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며,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

해설

① 대판 2004.6.25, 2004도2221

② 진술조서의 기재중 일부분을 믿고 다른 부분을 믿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곧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0.3.11. 80도145)

③ 다수설

④ 대판 2004.6.25, 2004도2221

이승준 맥형사소송법, 이승준 맥객관식이 앞으로는 이승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편-, 이승준 형사소송법 - 객관식문제편- 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출간예정 이승준 형사소송법 -기출문제편- 이승준 형사소송법 - 최신판례문제편-

답. ②
맥형소법 629p/ 마무리일일특강자료 56p 13번

문 11.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형사소송구조와 어울리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재판기관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재판하는 구조로,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동일하다. 소추기관이 재판까지 담당하는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심리의 객체가 되고, 소추 당시의 유죄심증이 재판단계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유죄로 될 가능성이 크다.

- ① 비밀주의, 서면주의, 법정증거주의
- ② 탄핵주의, 국가소추주의, 기소법정주의
- ③ 직권주의, 조서재판주의, 불고불리주의
- ④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자유심증주의

해설

설문은 규문주의를 의미하며 따라서 탄핵주의, 국가소추주의, 직권주의, 당사자주의, 불고불리의 원칙, 자유심증주의라는 단어들이 나오면 틀린지문이다.

답 ①

맥형소법 - 21p

문 12. 수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판사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는 검사의 증인신문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 ④ 여자에 대한 신체검사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여자의 신체에 대한 수색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 ① 제214조의2 제4항
- ② 제243조의2 제1항
- ③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21조의2 제5항).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하지만 기회를 주었지만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면 참여없이 증인신문 할 수 있다.

이승준 맥형사소송법, 이승준 맥객관식이 앞으로는 이승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편-, 이승준 형사소송법 - 객관식문제편- 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출간예정 이승준 형사소송법 -기출문제편- 이승준 형사소송법 - 최신판례문제편-

④ 제124조, 제141조 제3항

답 ③ 맥형소법 - 321p/ 마무리 일일특강자료 2p 5번

문 13.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도 편집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법원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기재된 대화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피고인과 타인간의 전화통화를 동의 없이 불법감청하여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없다.

해설

① 대판 2004.9.13, 2004도3161

② 대판 2004.9.13, 2004도3161

③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녹음디스크에 복사할 경우에도 동일하다)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대화 상대방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진 이상 그것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비디오로 촬영·녹음한 경우에도 그 비디오테이프의 진술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9.3.9. 98도3169).

④ 수사기관의 불법감청은 증거능력이 없다.

답 ③

맥형소법 - 605p/ 마무리 일일특강자료 54p 11번

문 14.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추권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②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료여

이승준 맥형사소송법, 이승준 맥객관식이 앞으로는 이승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편-, 이승준 형사소송법 - 객관식문제편- 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출간예정 이승준 형사소송법 -기출문제편- 이승준 형사소송법 - 최신판례문제편- 부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도 미친다.

④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해설

① 제326조 면소판결 사유이다.

② 대판 1992.4.24, 91도3105

③ 제253조 제2항

④ 제249조 제1항

답 ①

맥형소법 - 408p/ 마무리일일특강 자료 159번

문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배상명령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죄판결선고 이전에도 할 수 있으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도 있다.

② 배상명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질적 피해와 치료비손해에 한정된다.

③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내에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해설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배상까지 인정된다(소촉법 제25조 제1항)

③ 신청을 기각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에게는 불복의 방법이 없다. 그러나 신청인은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소촉법 제32조).

④ 소촉법 제33조 제5항

답 ④

맥형소법 - 869p/ 마무리일일특강 자료 341번

문 16.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경우라도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과거에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사실과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

② 공판절차갱신 후의 절차나 파기환송 후의 절차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기

이승준 맥형사소송법, 이승준 맥객관식이 앞으로는 이승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편-, 이승준 형사소송법 - 객관식문제편- 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출간예정 이승준 형사소송법 - 기출문제편- 이승준 형사소송법 - 최신판례문제편- 어렵다.

③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공소장일

본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더라도, 그것이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①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헌법상의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조항이나 평등조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대판 1990.10.16. 90도1813)

답 ① 맥형소법 - 399p/ 마무리일일특강 자료 158번

문 17.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수사하여 공소제기할 수 있다.
- ②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통지는 필요적이지만 고발인에 대한 경우는 임의적이다.
- ③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청에 항고할 수 없다.

해설

- ① 불기소처분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재수사하여 공소제기 할 수 있다.
- ②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58조 제1항).
- ③ 제258조 제2항
- ④ 검찰항고는 고소인과 고발인만이 할 수 있다.

답 ②

맥형소법 360p/ 마무리 일일특강 자료 156번

문 18.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재판장은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는 물론,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승준 맥형사소송법, 이승준 객관식이 앞으로는 이승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편-, 이승준 형사소송법 - 객관식문제편- 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출간예정 이승준 형사소송법 -기출문제편- 이승준 형사소송법 - 최신판례문제편-

④ 사법경찰관이 13세 미만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없다.

해설

①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59조의 2)

② 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제294조의 4)

③ 제294조의 2 제2항

④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제163조의 2 제2항)

답 ③

맥형소법 - 493p/ 마무리 일일특강자료 17p 26번

문 19. 공판정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함)

①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② 필요적 변호사건과 국선변호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③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인정신문시에도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 요건이 아니다.

④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인 경우에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해설

① 제278조

② 제282조

③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인정신문과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제277조 제3호). 주의할 것은 제277조 제1호의 경우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제277조 제1호) 와는 구별해야한다. 위 설문의 경우는 비록 다액 500만원 이하라고 되어있지만 구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277조 제3호가 적용된다.

④ 제277조 제2호

답 ③ 맥형소법 464p/ 마무리 일일특강자료 15p 23번

이승준 맥형사소송법, 이승준 맥객관식이 앞으로는 이승준 형사소송법 -기본이론편-, 이승준 형사소송법 - 객관식문제편- 으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출간예정 이승준 형사소송법 - 기출문제편- 이승준 형사소송법 - 최신판례문제편-

문 20.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에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친고죄인 저작권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만을 바꾸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 ③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법원은 단독범으로 기소된 사건을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 ① 대판 2008.5.29, 2007도 7260
- ② 대판 1987.7.21, 87도1101
- ③ 대판 1999.7.23, 99도1911
- ④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대판 1987.7.21, 87도1101)

답. ④

맥형소법 450p/ 마무리 일일특강자료 100p 7번문제